

의안번호	2220501
의 퇴 인	김은혜 의원
회 답 일	2026.09.23.
추 계 번호	26E3984
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세율 적용기한 삭제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세율의 적용기한을 삭제함에 따라 주세,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는 2027년 340억원 등 2027~2031년 5년간 총 2,026억원 (연평균 40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주세, 교육세, 부가가치세 등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세율 적용 기한 규정 삭제(안 제8조)	-340	-442	-428	-414	-401	-2,026	-405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(세율)	○ 생맥주(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)에 대한 경감세율(20%) 적용기한을 삭제 - (현행) 2026년 12월 31일 - (개정안) 삭제	-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8조(세율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 경감세율 대상인 생맥주의 출고량 증감 추세가 추계기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전제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주세 경감세율 대상인 생맥주 출고량은 2023년 20.3만kl에서 2025년 19.1만kl로 연평균 3.2% 감소하는 추세

[표 2] 주세 경감세율 대상인 생맥주 출고량: 2023~2025년

(단위: kl, %)

	2023	2024	2025	연평균 증감률
생맥주 출고량	203,586	202,804	109,800	-3.2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

- 생맥주에 대한 현행 주세 경감세율은 일반 맥주에 대한 주세율의 80%임
 - (일반 맥주) 1kl 당 885,700원
 - (생맥주) 1kl 당 708,500원¹⁾
- 개정안에 따라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세율의 적용기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주세,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세수는 2027년 340억원 등 2027~2031년 5년간 총 2,026억원(연평균 405억원) 감소
 - 주세 세수효과는 ‘생맥주 출고량×1kl 당 세율 변화’로 산출
 - － 생맥주 출고량은 최근 연평균 증감률(-3.2%)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 - 신고·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, 징수기준(당해연도 3/4, 차년도에 1/4로 감면)으로 추계액을 조정
 - 주세 외에, 주세에 과세되는 부가세(surtax)인 교육세(주세액의 30%), 주

1) 100원 미만은 절사

세 및 교육세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(10%)를 반영

[표 3]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세율 적용기한 규정 삭제 시 세수효과: 2027~2031년
(단위: 억원)

	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전체		-340	-442	-428	-414	-401	-2,026	-405
- 주세		-238	-309	-299	-290	-281	-1,417	-283
- 교육세		-71	-93	-90	-87	-84	-425	-85
- 부가 가치세	국세(74.7%)	-23	-30	-29	-28	-27	-138	-28
	지방소비세(25.3%)	-8	-10	-10	-10	-9	-47	-9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